안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

제정 1991. 4. 4 규 칙 제 5호
개정 2002. 9. 11 규 칙 제15호
일부개정 2015. 12. 21 의회규칙 제44호(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)
일부개정 2017. 9. 29 의회규칙 제45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,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9. 29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17. 9. 29>

제3조(신분증 규격 등) ① 안양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에는 의원증번호,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, 그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02. 9. 11, 2017. 9. 29>

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고,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하며,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02. 9. 11, 2017. 9. 29>

[제목개정 2017. 9. 29]

제4조(신분증의 발급권자) 신분증은 안양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 한다.

제5조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9>

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.

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 9. 11, 2017. 9. 29>

제6조(신분증의 반납 등)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

을 회수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2. 9. 11 규칙 제15호>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2. 21 의회규칙 제44호,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>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9. 29 의회규칙 제45호>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7. 9. 29>

의원 신분증(제3조제1항 관련)

앞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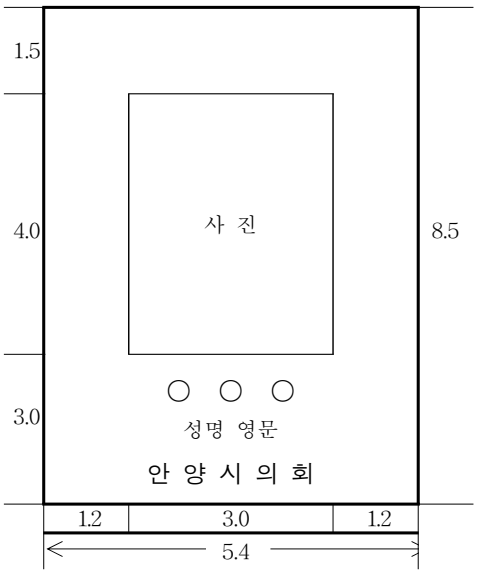

뒷면

NO.

안양시의회의원증

성 명 ○ ○ ○

생년월일

임 기

위 사람은 안양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.

년 월 일

안 양 시 의 회 의 장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5. 12. 21>

신 분 증 발 급 대 장

결재란	신분증 번 호	발 급 연월일	성명	생년 월일	신 규 재발급	회수 여부	재발급 사 유	반환	사진	비고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 12. 21>

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

1. 성　　명:

2. 생 년 월 일:

3. 재발급신청사유:

첨　부: 반명함판 사진 1매

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.　　.　　.

신청인:　　(인)